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수원지방검찰청

수원지검 전문공보관 강수산나  
전화 031-5182-4290 / 팩스 031-5182-4555

보도자료  
2021. 6. 10.(목)

제 목

### 지역축협 임원선거 관련 금품제공사범 구속 기소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-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(부장검사 차범준)는 지역축협의 임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각각 450만 원 ~ 1,6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3명을 '21. 6. 10. 각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, 이에 가담한 조합원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하였음
- 신속한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대표행위를 한 **후보자 3명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금권 선거 범죄에 엄정 대처**

#### 1 피고인

- 피고인 A(59세, 축산업, 구속, E축협 비상임이사 선거 당선자)
- 피고인 B(52세, 축산업, 구속, E축협 비상임이사 선거 낙선자)
- 피고인 C(57세, 축산업, 구속, E축협 비상임이사 선거 낙선자)
- 피고인 D(45세, 축산업, 불구속, E축협 대의원)

## 2 공소사실 요지

- '21. 1. 28. 실시된 E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,
  - '21. 1. 초순부터 1. 26.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피고인 A는 합계 600만 원, B는 합계 450만 원, C는 합계 1,6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하고,
  - 피고인 D는 위 일시경 A, B, C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, 자신도 현금 150만 원을 제공받아 【농업협동조합법위반】

## 3 주요 수사 경과

- '21. 3. 23. 익명 고발장 접수
- '21. 4. 9. 피의자들 휴대전화 등 압수·수색
- '21. 4. ~ 5. 피의자들 및 금품수수자 등 관련자 조사
- '21. 5. 26. A, B, C 구속
- '21. 6. 10. A, B, C 구속 기소, D 불구속 기소

※ 금품수수자들에 대하여는 수수 금액, 기타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처분 예정

## 4 수사 결과 및 의의

- 익명으로 접수된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한 압수·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같은 친목단체 회원인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는 한편 지역별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규명
- 지역축협 임원선거는 선거권자인 대의원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대의원 1명이 복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선거인 대수 행위가 만연한바,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들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위와 같은 지역 사회의 왜곡된 선거 문화에 경종
- 수원지검은 향후에도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 범죄를 엄단함으로써,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